



나라를 걱정하는 국회를 바란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국익 우선’ 잊지 말아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8개월 동안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속이 탄 과학단체가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언론의 지적이나 서명운동에도 꿈쩍하지 않더니 세월호 사건으로 국회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5월 2일 132건이나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때 처리한 법안은 제도상 평균 소요되는 250일보다 70% 정도 긴 423일이 걸렸다고 한다(윤지웅, 2014. 5. 13.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열린포럼 자료 참조).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국가이익 우선,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고 선서했지만 실상은 국가이익은 안중에 없고, 양심도 별로 작용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았다. 국익을 앞세우게 하려면, 양심을 지키게 하려면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선언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때문일 것이다.



글 **고영희**
대한변리사회 회장
mymail@patinfo.com

글쓴이는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성장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등을 겸임하고 있다.

처리시한을 정하자

법안을 처리기간 423일 동안 깊이 있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 그보다 더 걸려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 내용을 고민하기보다 다른 법(방송법)에 묶여 애꿎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행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대부분 ‘처리시한’을 정해두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이므로 행정부는 이를 꼭 지켜야 한다. 행정처리시한과 같이,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법령은 이런 처리시한제도를 들여올 수 없을까. 법안이 제출될 때, 통상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그 법안에 해결할 것이 많으면 기준 시간에서 날짜를 더 잡고, 통상보다 적으면 짧게 잡아 법안 첫머리에 처리시한을 달아두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접수하면 내부 심의를 거쳐 해당 법안 정보에 처리 예정 시한을 공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번과 같이 비난 여론이 일면 그때 무더기로 처리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시행일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다수결 원칙을 지켜라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원이 말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으로 운을 떼다.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이 어느 법안을 작성하고 반대한다면 그 법안은 더 심의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 존경하는 의원이 악을 쓰면서 반대하는데 어찌 그걸 무릅쓰고 계속 심의할 수 있겠는가. 거의 모든 법안에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부딪친다. 어느 한 의원이 “내가 우리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목청을 높이면 그 법안은 그냥 서류보관고에 들어가 더 나 오지 못한다. 예전에 기술사법 개정안이 그랬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던 변리사법 개정안이 그랬다. 이게 민주주의가 작용하는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 서로 의견이 부딪칠 때를 대비하여 의사결정방법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정해줬다.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 한두 사람이 격하게 반대한다고 하여 의안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되겠는가. 국회는 민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가끔 수가 모자란 야당이 표결로는 막지 못하겠기에 단상을 차지하여 의안을 올리지 못하게 물리력을 동원하는 때도 있지만 이것도 옳지 않다. 힘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활동을 잘해서 표를 얻어라. 만약 법률이 부당한데도 숫자를 이용하여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그 사람이나 정당을 선거에서 표로 단죄해야 한다.

의안 심의에는 국회법에서 정한 다수결 원칙을 지켜라. 법안을 낸 사람이 좋은 논리로 많은 사람을 이해시켰다면 그 법은 통과되어야 한다.

제척과 기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심의에서 빠져라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실제 이런 조항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어길 때 징계규정이 있지만 일반 법률에서처럼 형사처벌할 수 없고, 징계 수준도 별개 아니다. 그러니 겸직 금지 규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국회법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변호사법 38조). 현직 의원이면서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 막강한 힘을 지닌 현직 국회의원이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상대방은 또 다른 의원을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민사소송법에는 법관의 제척과 기피 조항이 있다. 제척은, 법관이 어느 사건에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기피는, 법관이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

자가 그 법관이 직무를 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제도이다. 모두 재판을 공정성 있게 진행하려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많다. 국회의원도 직·간접으로 얽힐 수 있다. 현직 의원이 관련된 법안이라면 법안의 심의로 처리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변호사 직업에 관련된 법안은 정부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가 버티고 있어 통과되기 어렵고, 국회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의원이 있고, 설령 상임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법사위에서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재판에서 제척이나 기피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해당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스스로 그 법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하고, 회의 주관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을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위원장은 법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을 제척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좋겠다. 국회의원이 선서했음에도 국익보다는 개인 이익을 숨기고 법안을 끌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왔다. 이제 제도로 막을 길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 본 업무에 충실하라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한다. 상임위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사위에 보내 체계와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이지, 법률의 실체를 건드릴 권한은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4천761건이고 그 중 처리된 법안 8천273건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6천500여 건이 자동폐기되었다. 그 중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자동폐기 운명을 맞은 것도 많을 것이다. 이종혁 의원이 제출한 변리사법 개정안(의안번호

호 1801689)은 2008년 11월 3일이고, 2009년 4월 20일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3년 이상 법사위에서 잠든 채 끝내 자동폐기되었다. 법률체계와 자구심사 핑계로 법사위에서 3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된 셈인데, 이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다. 17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는 법사위를 변호사 영역을 지키는 보루로 본다. 자동자격을 없애는 세무사법을 법사위가 막았다. 소송대리권을 둘러싸고 노무사와 법무사의 요구도 법사위에서 막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법률’이란 말만 들어가면 모두 변호사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입법과정에서 다른 전문가에게 변호사법 영역과 겹치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법무부와 법제처, 그리고 국회 법사위가 막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므로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법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세간의 평은 사실 그대로이다.

기술사는 고도한 기술전문가로 이공계 출신이라면 되고 싶은 전문가이다. 전문자격사법인 기술사법에는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이 없다. 다른 분야 전문가법과 비교하면 전문가법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기술사법에 기술사 자격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영역으로 ‘기술분야 행정에서, 행정부를 상대로 청구를 대리하는 업무’를 넣으려는 기술사법 개정안이 입법에 고됐었다. 이때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반대했고, 법무부를 설득한 뒤에는 마지막 법제처에서 반대하여 끝내 삭제됐다. 의원입법으로 그 업무를 넣으려 해도 법사위를 의식하여 나서 줄 의원을 찾기 어렵다. 국회는 변호사 영역과 충돌하면 헤쳐나갈 길이 없다.

이게 사회정의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다.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에는 약 20% 정도가 법조계 출신이다. 이들은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포진하고 있다. 어느 위원회에도 법조인 출신이 있다. 법안이 올 때마다 ‘변호사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법안을 반대하면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익을 먼저 챙기자

법을 처리하지 못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을 자주 본다.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 현장직원이 여러 가지 기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출근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다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무척 쓰리다. 일을 못하면 그날 돈을 벌지 못하고,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일꾼들은 현장사무실로 쳐들어와 항의하거나 어떤 때는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한다. 조그만 공사현장에서도 이렇진대, 국회가 법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데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가슴이 아리지 않은 것 같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정쟁에 매달려 나라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담화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다. 계획 가운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할 것이 많을 것이다. 벌써 국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선서한 대로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이익을 챙기는 곳이 아니다. 선서한 대로 움직이는 의원을 많이 보고 싶다. 다음 선거에서는 그렇지 못한 의원을 꼭 기억하자. ㉮